

미래항공모빌리티기술센터 규정



한국항공대학교

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22. 8. 10.		16		
2			17		
3	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미래항공모빌리티기술센터 규정 개정(안)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명칭 및 소재지) 본 기술센터는 한국항공대학교 부속 미래항공모빌리티기술센터 (이하 '본 기술센터'라 함)라 칭하고, 한국항공대학교(이하 '본 대학교'라 함)내에 둔다. <개정 2022.8.10>

제2조 (목적) 본 기술센터는 UAM 관련 미래 모빌리티 전반에 걸친 과학기술을 연구하여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 (사업) 본 기술센터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
- ① UAM 및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에 대한 자료의 수집, 조사, 연구
- ② 동 분야의 기술개발
- ③ 동 분야의 연구자료집, 도서, 연구지, 소식지 발간
- ④ 동 분야의 연구발표회
- ⑤ 동 분야의 산학협동연구, 위탁연구, 과제연구 등의 수행
- ⑥ 타 기관과의 협력, 공동연구 및 기술지도
- ⑦ 기타 본 기술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 (임원 및 임무) ① 본 기술센터에 센터장 1인을 두며, 부센터장 1인, 운영부장 1인,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22.8.10>

- 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재직하는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- ③ 센터장은 기술센터를 대표하고 센터 업무를 통괄한다.
- ④ 부센터장, 운영부장 및 간사는 기술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- ⑤ 부센터장은 소장 부재 시 소장의 임무를 대행하고, 대내 업무를 담당한다.
- ⑥ 운영부장은 기술센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⑦ 간사는 기술센터 행정처리 및 실무사항을 수행한다.
- ⑧ 감사는 회계 연도 말에 본 기술센터의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,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5조 (조직) ① 본 기술센터에는 연구지원실과 3개의 연구부를 둔다.

- ② 연구지원실 및 정책연구실의 운영은 운영부장이 담당한다.
- ③ 본 기술센터에 소정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별로 다음의 세 연구부를 둔다.
 1. 자율비행 제어 및 비행시험 연구부

2. 복합재료 소재 및 신공정 기술 연구부

3. 인프라 및 교통관리 연구부

④ 각 연구부장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연구부의 설치와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센터장이 시행한다. <개정 2022.8.10>

⑤ 각 연구부에는 관련 연구실을 둘 수 있다.

⑥ 연구지원실은 기술센터 운영관리의 세부사안을 수행한다.

제6조 (연구원) 본 기술센터에는 책임연구원, 선임연구원, 연구원, 연구조원, 특별연구원을 둘 수 있고 필요시 센터장이 위촉한다.

1. 책임연구원은 본 대학교에 재직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.

2. 선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
3. 연구원은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로 한다.

4. 연구조원은 본 대학교에 학사과정 이상 학생 또는 동등 경력자로 한다.

5. 특별 연구원은 본 기술센터의 목적에 찬동하는 교외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위촉한다. <개정 2022.8.10>

제7조 (행정요원) 기술센터 행정업무를 담당하며, 센터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2.8.10>

제 3 장 운 영

제8조 (위원회)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9조 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본 기술센터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며, 센터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10조 (운영위원회 구성)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, 부센터장 및 간사로 구성하며, 임명직 위원은 책임연구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되, 9명 이내로 구성한다.

제11조 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① 기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

② 연구과제의 선정

③ 연구계획, 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, 평가

④ 본 기술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정

⑤ 기타 본 기술센터 운영상의 중요 사항

제12조 (회의)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13조 (재정) 본 기술센터의 재정은 자체수입금, 대학에서 책정한 기술센터 예산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14조 (회계년도) 본 기술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교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15조 (연구비지급 및 관리) 연구비 지급 및 관리 규정은 대학의 규정에 준하며 기타 세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. <개

정 2022.8.10>

제16조 (규정준용) 이 규정에서 준용하지 않은 기타사항은 본 대학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제 5 장 기 타

제17조 (시행세칙)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시행세칙을 둘 수 있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.